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문개정 1998. 10. 8 조례 제139호
개정 1999. 1. 14 조례 제157호
1999. 4. 27 조례 제215호
1999. 11. 4 조례 제230호
1999. 11. 25 조례 제236호
2000. 2. 18 조례 제252호
2000. 4. 6 조례 제259호
2000. 10. 13 조례 제281호
2001. 1. 11 조례 제312호
2001. 8. 3 조례 제340호
2001. 12. 17 조례 제362호
2002. 6. 15 조례 제399호
2002. 6. 26 조례 제405호
2002. 7. 31 조례 제407호
2003. 2. 26 조례 제427호
2003. 3. 31 조례 제434호
2003. 7. 31 조례 제462호
2003. 9. 22 조례 제466호
2004. 1. 15 조례 제498호
2004. 6. 12 조례 제520호
2004. 7. 21 조례 제523호
2004. 11. 19 조례 제546호
2005. 2. 11 조례 제566호
2005. 5. 21 조례 제581호
2005. 7. 29 조례 제601호
2005. 10. 5 조례 제661호
2006. 4. 12 조례 제800호
2006. 10. 13 조례 제830호
2006. 12. 29 조례 제857호
2007. 7. 1 조례 제8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 14, 2005. 2. 11, 2007. 7. 1〉

제2조(정원의 총수)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03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2,01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전문개정 2007. 7. 1〕

제3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용인시 본청, 용인시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06. 4. 12〉

〔전문개정 2005. 10. 5〕

제4조(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 용인시 본청, 용인시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 10. 5〕

제5조(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용인시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 시한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06. 4. 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1999. 1. 14〉

③(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4.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용인시에 두는 정원 중 1명(수지읍사무소 민원개발담당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9. 1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차별의 정원의 경과조치)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을 적용하며,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하며 2002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을 적용한다.

부칙 〈1999.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차별 정원의 경과조치)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을 적용하며,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하며 2002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을 적용한다.

부칙 〈2000. 2.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차별 정원의 경과조치)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을 적용하며, 2001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하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을 적용한다.

부칙 〈2000. 4.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차별 정원의 경과조치)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을 적용하며, 2001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하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을 적용한다.

부칙 〈2000. 10.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차별 정원의 경과조치)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을 적용하며, 2001년 6월 30일 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하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을 적용한다.

부칙 〈2001. 1.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차별 정원의 경과조치)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을 적용하며, 2001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하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을 적용한다.

부칙 〈2001. 8.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직급별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2002년 6월 30일까지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집행기관 정원 1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 12. 1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직급별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2002년 6월 30일까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 6.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해 증원된 정원 중 10명(집행기관의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2.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31〉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26〉

이 조례는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해 증원된 정원 중 14명(집행기관의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6. 12.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4. 6.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건설사업단 신설에 따라 증원된 정원 중 7명(집행기관의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4. 7.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증원된 정원 중 혁신분권관련 3명(집행기관의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4.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증원된 정원 중 본청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사업소 26명(4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4명, 9급 7명 기능9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5. 5.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일제강제동원업무와 관련하여 증원된 본청 2명(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5.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3. 지출원 : 사회복지담당”을 “3. 지출원 :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②「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담당”을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③「용인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사회복지담당”을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④「용인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청소년담당”을 “청소년육성담당”으로 각각 한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6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용인시 본청 정원 중 행정과 혁신분권업무담당자인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일제강제동원업무담당자인 일반직 7급 1명, 8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회계과 복식부기업무 담당자인 일반직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일반직 8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건설사업단 일반직 4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3명, 9급 7명 기능직 10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여성회관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4명 기능직 8급 2명, 9급 1명, 10급 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6. 4. 12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3 조례 제8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8명”을 “19명”으로 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 조례 제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9명”을 “22명”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05. 5. 21, 2005. 7. 29, 2005. 10. 5, 2006. 4. 12, 2006 . 10. 13, 2006. 12. 29, 2007. 7.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구 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2,034	604	22	181	245	586	396
계		1	1					
정무직	시장	1	1					
계		1,685	536	14	114	172	511	338
일반직	2급	1	1					
	4급	15	5	1	3	3	3	
	5급	96	29	2	3	11	21	30
	6급	385	133	5	20	39	117	71
	7급	525	194	4	43	52	143	89
	8급	405	137	2	36	39	122	69
	9급	258	37		9	28	105	79
계		13	2		11			
별정직	5급상당							
	6급상당							
	6~7급상당	10			10			
	7급상당	3	2		1			
	8급상당							
계		2	2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2	2					
계		35			35			
지도직	지도관	3			3			
	지도사	32			32			
계		298	63	8	21	73	75	58
기능직	6급	9	3	1		5		
	7급	26	9	1		14	2	
	8급	43	10	4	5	11	12	1
	9급	97	16	1	7	15	33	25
	10급	123	25	1	9	28	28	32

〔별표 2〕 〈신설 2006. 4. 12, 개정 2006. 12. 29, 2007. 7. 1〉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관리기관별	소속부서	구분		정원(명)	운영시한	비고
		직종	직급			
총계		총계		40		
		일반직	4급	1		
			6급	9		
			7급	13		
			8급	7		
			9급	9		
		기능직	9급	1		
본청	행정과 시정	일반직	7급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일제강제 동원
			8급	1		
			7급	1	2008년 12월 31일까지	과거사정리
	정책기획과 행정혁신	일반직	6급	1	2008년 6월 30일까지	구 혁신분권
			7급	1		
			8급	1		
	재정법무과 예산	일반직	7급	1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
			8급	1		
	회계과 복식부기	일반직	6급	1	2008년 12월 31일까지	복식부기 시범사업
			8급	1		
			9급	1		
사업소	건설사업단	일반직	4급	1	2010년 3월 31일까지	
			6급	7		
			7급	9		
			8급	3		
			9급	8		
		기능직	9급	1		